

2019년도 제28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자 : 2019. 12. 13.(금요일)
- 방 법 : 온라인심의
- 대 상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4명
 - 심의위원 : 백대용(분과위원장), 오영주 위원, 최승수 위원, 최현용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의결안건〉 ※ 안건 검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II. 회의안건 및 결과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회의안건: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50건(안건번호 제2019-161742호~제2019-161791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그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기로 의결함

Ⅲ. 주요내용

- A 위원 : 상기 안전과 관련하여,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저작권법 133의3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하여 가결함
다만 이미 삭제되었거나 전송중단된 경우에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해야 할 것임

- B 위원 : 안전번호 제2019-161742호~161791호(250건의 게시물)는 불법복제한 어문, 영상저작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C 위원 : 본건 심의안건은 모두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되고, 개별 이용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저작물을 복제·전송할 수 있는 권원도 존재하지 않아 보이며, 저작권자가 모두 상업적인 목적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저작물로 이러한 불법복제물의 유포는 건전한 저작물 유통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에 해당됨. 특히, 이번 안전들은 모두 웹하드에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어문 및 영상저작물로 보호의 필요성 및 시급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됨.
그러므로 안전번호 제2019-161742호~161791호는 불법복제물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것으로 모두 저작권법 제133조의3의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하므로 심의안건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게시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다만 이미 삭제 또는

전송중단되어 있는 안전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D 위원 : 금번 심의안건은 불법 복제한 어문, 영상저작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스트리밍, 복제물 파일의 업로드 등의 방법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될 개연성이 높음.

저작물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고 저작권법 제133조의 3 시정권고를 내리는 것이 그 제도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함.

2019년 제28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12. 13.

분과위원장 백대용

위원 오영주

위원 최승수

위원 최현용